

4.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9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 .

제 출 자 : 종 로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 중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2조(도로점용허가)의 허가 대상시설물에 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”를 신설함.(안 제2조제3호)

3. 개정근거

가. 관계법령

- 도로법 제40조(도로의 점용), 제43조(점용료의 징수), 제44조(점용료징수의 제한)
- 도로로법시행령 제24조(점용의 허가신청)제5항제11호, 제26조의5(점용료의 감면)

나. 관련지침

- 서울특별시 재시84000-74(2003.3.10)호에 의한 “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”와 관련 사항임

4. 예산수반사항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5.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도로점용허가)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)공작물·물건·기타의 시설물로서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~2.(생략) <신설>	제2조(도로점용허가)----- ----- ----- -----, 1.~2.(현행과 같음) 3.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.